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9.3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9월 3일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이창열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,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8조제2항에서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- (2)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
- (3)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함.
-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 ~ 오전 8시 ⇒ 오전 0시 ~ 오전 10시
 - 의무휴업일 지정 :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⇒ 매월 2일
- ※ 공휴일 중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.
- (4)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의 기준을 변경함.
-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%에서 55%로 상향조정
- (5) 안 제14조의2제2항 ~ 제4항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.

3. 검토보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일부 개정 되어 2013. 4. 24자로 시행됨에 따라,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,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『유통산업발전법』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